

경제 및 고용 동향

◆ 2012년 7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6% 증가, 전월대비 0.3% 증가

○ 2012년 7월 생산은 서비스업·광공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6.2%), 기계장비(-2.6%), 비금속광물(-8.2%)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1.9%), 화학제품(4.7%), 1차 금속(2.8%)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0.3% 증가함.

－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임대(-3.8%), 협회·수리·개인(-1.5%), 교육(-1.1%)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7.0%), 하수·폐기물처리(6.6%), 전문·과학·기술(4.7%), 금융 및 보험업(1.9%)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함.

○ 2012년 7월 소비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2.7%, 1.2% 증가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컴퓨터·통신기기, 가전제품 등 내구재와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함.

－ 설비투자는 일반기계류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전기 및 전자기기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함.

－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기계설치, 철도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공장·발전·신규주택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3.8% 증가함.

- 7월 동행종합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는 감소하였으나 소매판매액지수, 건설기성액,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6% 상승함.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함.

◆ 2012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2% 상승(생활물가지수 0.6% 상승)

- 2012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3(2010=100)으로 나타나 전월대비 0.4%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 1.2% 상승하여 지난달에 이어 1%대 시현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기타상품 및 서비스(-4.9%), 통신(-3.4%) 부문만 하락하였고 의류 및 신발(4.9%), 주택·수도·전기·연료(4.7%),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2.7%), 교통(1.8%), 교육(1.7%), 주류 및 담배(1.2%), 음식 및 숙박(0.5%),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0.4%) 부문 등을 중심으로 상승
 - 2012년 8월 생활물가지수는 106.0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0.7% 상승, 전년동월대비 0.6% 상승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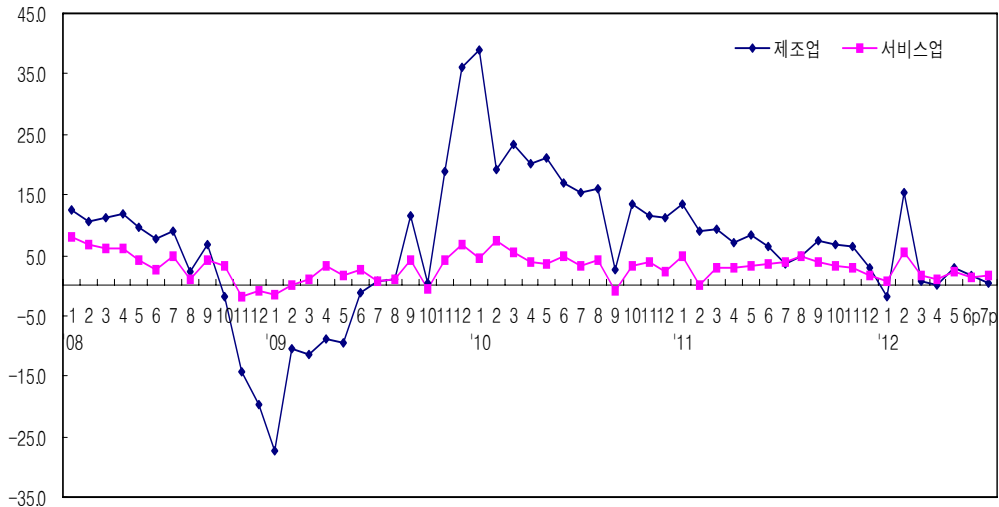
(단위: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09					2010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7월	1/4	2/4p	7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5.7	-6.1	4.3	16.2	-0.8	25.8	19.5	10.9	11.7	16.2	10.4	7.2	5.3	5.0	6.9	3.7	3.8	1.5	0.3(-0.4)
	제조업 생산	-16.5	-6.6	4.4	16.8	-0.9	26.8	20.2	11.2	11.9	16.3	10.6	7.4	5.1	5.3	7.0	3.6	4.2	1.5	0.3(-1.8)
	출하	-14.9	-5.8	2.1	12.8	-1.7	21.8	17.2	9.9	11.9	14.3	11.9	7.2	4.9	3.5	6.7	2.8	3.3	1.5	1.4(-1.8)
	내수	-15.7	-5.9	3.4	12.3	-1.8	21.2	15.4	6.6	8.3	11.5	6.8	3.8	2.7	0.2	3.3	0.8	0.3	-1.4	-0.4(1.2)
	수출	-13.8	-5.7	0.4	13.3	-1.7	22.5	19.7	14.5	16.9	18.1	18.1	11.6	7.7	7.2	10.8	5.2	6.7	4.9	(3.4-4.8)
	서비스업생산	-0.3	2.4	1.9	3.7	2.0	5.7	4.0	2.3	3.1	3.9	2.8	3.3	4.5	2.7	3.3	4.0	2.5	1.7	1.5(0.7)
소비	소비재 판매	-4.7	1.5	2.8	10.8	2.6	9.9	4.9	7.5	5.1	6.7	5.4	5.7	4.7	1.9	4.3	5.5	2.0	1.0	2.7(3.4)
투자	설비투자	-17.9	-12.9	-9.9	10.2	-8.2	25.5	24.5	23.3	13.5	24.2	5.4	4.8	-3.1	-4.7	0.7	-3.0	9.4	-0.8	1.2(2.5)
물가		3.9	2.8	2.0	2.4	2.8	2.7	2.6	2.9	3.6	3.0	4.8	4.2	4.8	4.0	4.0	1.5	3.0	2.4	1.2(0.4)

주: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12.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8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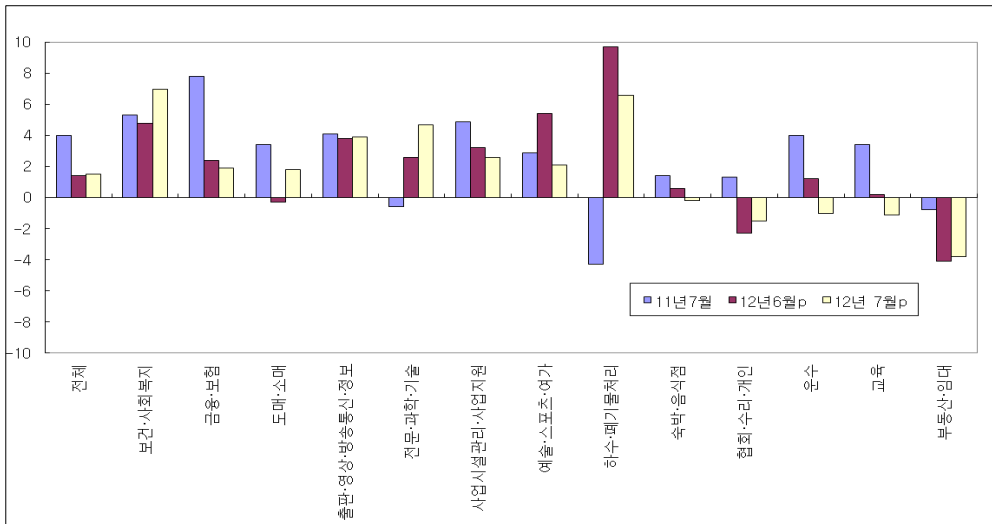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2. 8), 『2012년 7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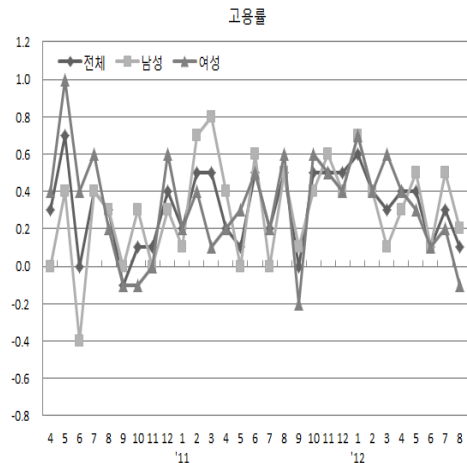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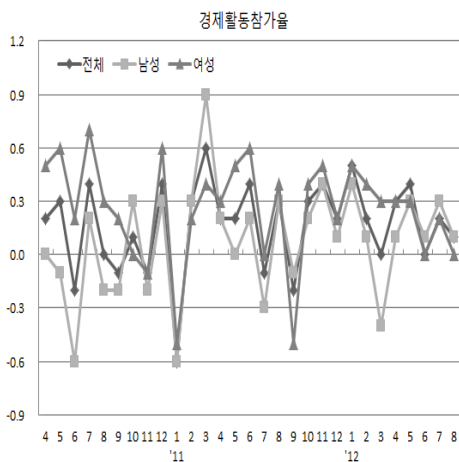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 지속

- 2012년 8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5,62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6천 명(1.4%) 증가
 -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971천 명으로 213천 명(1.4%) 증가하였고, 여성은 10,652천 명으로 153천 명(1.5%) 증가
- 2012년 8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 성별로 보면 남성(73.5%)은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여성(50.0%)은 전년동월대비 0.0%p 상승(그림 3 좌측 참조).
- 2012년 8월 중 고용률은 59.7%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 남성의 고용률은 71.2%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8.6%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그림 3 우측 참조).
- 2012년 8월 중 취업자는 24,85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4천 명(1.5%)이 증가
 -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49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5천 명(1.6%)이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36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9천 명(1.4%)이 증가(그림 4 참조).
- 2012년 8월 중 실업자는 76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 명(0.2%)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과 동일

[그림 3] 성별 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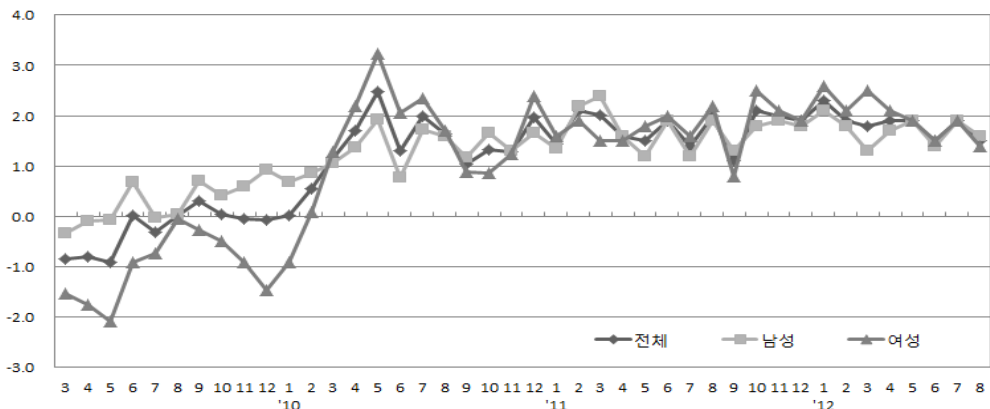
	2011					2012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8월
경제활동인구	24,488 (1.3)	25,437 (1.6)	25,269 (1.1)	25,257 (1.7)	25,202 (1.6)	24,873 (1.6)	25,844 (1.6)	25,901 (1.7)	25,623 (1.4)
참가율	59.9	62.0	61.5	61.4	61.1	60.1	62.3	62.2	61.5
취업자	23,459 (1.8)	24,572 (1.7)	24,483 (1.5)	24,495 (2.0)	24,462 (2.0)	23,927 (2.0)	25,003 (1.8)	25,106 (1.9)	24,859 (1.5)
고용률	57.4	59.9	59.5	59.6	59.4	57.8	60.2	60.3	59.7
실업자	1,028	865	786	762	740	947	841	795	764
실업률	3.9	3.4	3.1	3.0	2.9	3.8	3.3	3.1	3.0
비경제활동인구	16,392 (0.8)	15,559 (0.4)	15,847 (1.2)	15,862 (0.3)	16,014 (0.3)	16,495 (0.6)	15,669 (0.7)	15,727 (0.7)	16,042 (1.1)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2.9), 『2012년 8월 고용동향』.

- 남성 실업자는 47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 명(-2.5%) 감소, 여성 실업자는 29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천 명(5.0%) 증가
 - 실업률은 남성이 3.3%로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 여성은 2.6%로 전년동월대비 0.4%p 감소
- 2012년 8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04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0천 명(1.1%)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9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천 명(0.8%)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64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7천 명(1.3%) 증가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2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천 명 증가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54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4천 명(-5.1%) 감소.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215천 명으로 18천 명(0.4%) 증가

◆ 제조업 취업자 증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 2012년 8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60천 명, 3.1%), 도소매·숙박음식점업(121천 명, 2.2%), 제조업(80천 명, 2.0%)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20천 명, -1.1%), 전기·운수·통신·금융업(-43천 명, -1.4%), 건설업(-35천 명, -2.0%) 등에서는 감소
 - 2012년 7월과 8월 두 달 연속 제조업 취업자 증가함(그림 5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7월			7월	8월
전 산업	23,459 (1.8)	24,572 (1.7)	24,483 (1.5)	24,495 (2.0)	24,462 (2.0)	23,927 (2.0)	25,003 (1.8)	25,106 (1.9)	24,859 (1.5)
농림어업	1,207 (-2.3)	1,736 (0.2)	1,704 (-2.9)	1,713 (-2.2)	1,521 (-1.5)	1,176 (-2.6)	1,713 (-1.4)	1,712 (0.8)	1,694 (-1.1)
제조업	4,139 (5.8)	4,127 (2.8)	4,041 (-0.3)	4,031 (-0.7)	4,056 (-1.8)	4,037 (-2.5)	4,061 (-1.6)	4,114 (0.8)	4,111 (2.0)
건설업	1,641 (-0.2)	1,774 (-2.3)	1,755 (-2.0)	1,789 (-0.1)	1,832 (4.0)	1,721 (4.8)	1,807 (1.9)	1,781 (1.5)	1,753 (-2.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471 (-1.1)	5,457 (-0.1)	5,496 (1.0)	5,488 (1.6)	5,542 (1.8)	5,571 (1.8)	5,596 (2.6)	5,638 (1.0)	5,609 (2.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097 (3.0)	8,529 (2.8)	8,473 (2.8)	8,451 (3.5)	8,486 (3.1)	8,398 (3.7)	8,820 (3.4)	8,836 (3.7)	8,710 (3.1)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880 (1.6)	2,933 (3.6)	3,001 (6.6)	3,011 (6.7)	3,011 (5.5)	3,011 (4.5)	2,991 (2.0)	3,010 (0.7)	2,968 (-1.4)

주 :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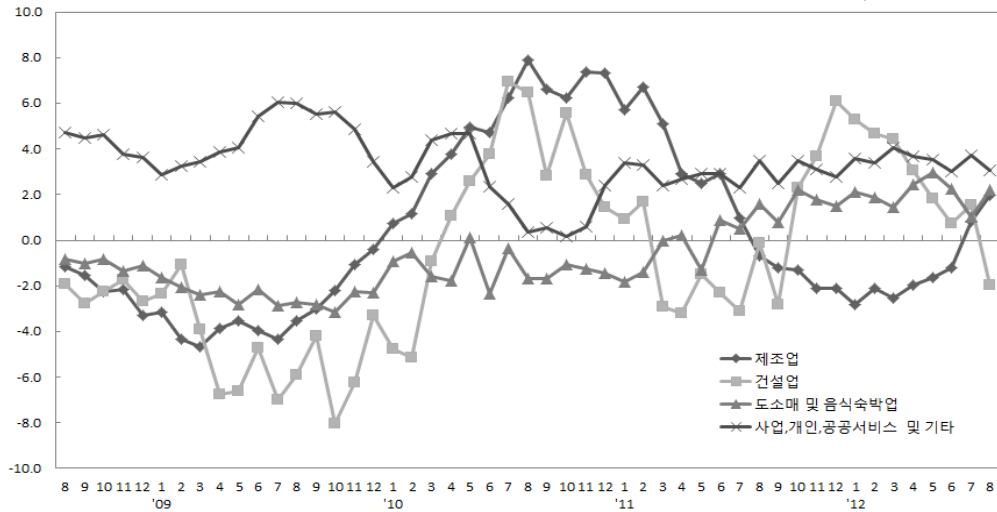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2012. 9), 『2012년 8월 고용동향』.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자영업자 증가 지속

- 2012년 8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12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0천 명(2.0%)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73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4천 명(1.3%)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1,203천 명으로 494천 명(4.6%)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4,935천 명으로 96천 명(-1.9%) 감소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595천 명으로 174천 명(-9.8%) 감소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그림 6 좌측 참조).
 - 자영업자는 5,803천 명으로 123천 명(2.2%) 증가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322천 명으로 17천 명(1.3%) 증가하였음(그림 6 우측 참조).
- 2012년 8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7,27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18천 명(18.1%) 증가,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6,837천 명으로 767천 명(-4.4%) 감소
 - 18시간 미만 취업자 1,433천 명 중에서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35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 명(-2.5%) 감소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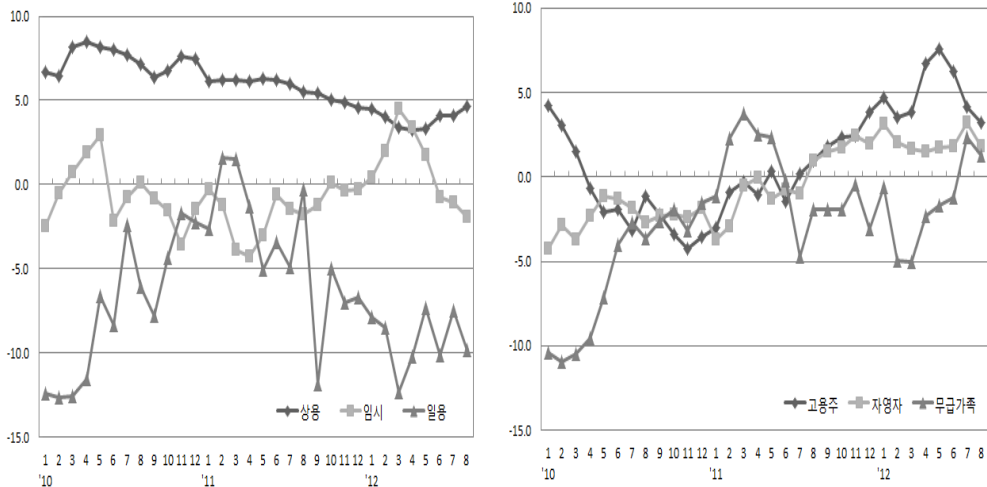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8월
전 체	23,459 (1.8)	24,572 (1.7)	24,483 (1.5)	24,495 (2.0)	24,462 (2.0)	23,927 (2.0)	25,003 (1.8)	25,106 (1.9)	24,859 (1.5)
비임금근로자	6,542 (-1.5)	7,004 (-0.3)	6,965 (-0.4)	6,985 (0.4)	6,878 (1.5)	6,650 (1.6)	7,154 (2.1)	7,196 (3.3)	7,125 (2.0)
자영업주	5,399 (-2.1)	5,657 (-0.7)	5,680 (0.6)	5,680 (0.9)	5,639 (2.3)	5,548 (2.8)	5,830 (3.1)	5,863 (3.5)	5,803 (2.2)
무급가족종사자	1,143 (1.7)	1,348 (1.5)	1,285 (-4.7)	1,305 (-1.9)	1,239 (-2.0)	1,102 (-3.6)	1,324 (-1.8)	1,333 (2.4)	1,322 (1.3)
임금근로자	16,917 (3.2)	17,568 (2.5)	17,518 (2.3)	17,510 (2.7)	17,585 (2.2)	17,277 (2.1)	17,849 (1.6)	17,911 (1.4)	17,734 (1.3)
상용근로자	10,413 (6.2)	10,681 (6.2)	10,731 (5.6)	10,710 (5.5)	10,820 (4.8)	10,825 (4.0)	11,059 (3.5)	11,153 (4.1)	11,203 (4.6)
임시근로자	4,804 (-1.8)	5,041 (-2.7)	5,072 (-1.5)	5,031 (-1.8)	5,042 (-0.2)	4,914 (2.3)	5,114 (1.4)	5,081 (-1.1)	4,935 (-1.9)
일용근로자	1,701 (0.1)	1,846 (-3.3)	1,716 (-5.7)	1,769 (-0.3)	1,723 (-6.3)	1,538 (-9.6)	1,675 (-9.3)	1,676 (-7.5)	1,595 (-9.8)
36시간 미만	3,246 (-33.1)	3,210 (0.4)	8,464 (154.2)	6,158 (73.6)	3,217 (4.1)	3,313 (2.1)	3,284 (2.3)	3,564 (0.0)	7,275 (18.1)
36시간 이상	19,739 (11.7)	21,067 (1.7)	15,419 (-24.3)	17,604 (-11.1)	20,937 (1.5)	20,081 (1.7)	21,425 (1.7)	21,134 (2.6)	16,837 (-4.4)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2. 9), 『2012년 8월 고용동향』.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 전년동월대비 30대 실업률 감소

- 2012년 8월 중 연령별 실업률은 30대(2.8%, -0.6%p)에서 감소
 - 15~29세(6.4%, 0.1%p), 40대(2.0%, 0.0%p), 50대(2.3%, 0.3%p), 60세 이상(2.1%, 0.3%p)은 증가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2.1%, 0.1%p), 대졸 이상(3.0%, 0.0%p)에서 증가하고 고졸(3.4%, -0.1%p)에서는 감소
- 2012년 8월 중 전체 실업자 764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3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 명 증가하였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730천 명으로 전년동월과 동일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7월	8월
전 체	1,028(4.2)	865(3.4)	786(3.1)	762(3.0)	740(2.9)	947(3.8)	841(3.3)	795(3.1)	764(3.0)
15~29세	372(8.8)	332(7.9)	284(6.7)	265(6.3)	292(7.1)	346(8.2)	341(8.1)	314(7.3)	266(6.4)
30~39세	237(4.0)	211(3.5)	189(3.2)	201(3.4)	171(2.9)	190(3.2)	188(3.2)	173(2.9)	165(2.8)
40~49세	167(2.5)	145(2.1)	138(2.0)	138(2.0)	131(1.9)	164(2.4)	135(2.0)	122(1.8)	137(2.0)
50~59세	133(2.7)	107(2.0)	108(2.1)	103(2.0)	94(1.8)	124(2.3)	112(2.0)	118(2.1)	126(2.3)
60세 이상	119(4.5)	70(2.3)	67(2.1)	56(1.8)	53(1.8)	124(4.4)	66(2.0)	68(2.0)	70(2.1)
중졸 이하	195(4.1)	112(2.1)	119(2.3)	103(2.0)	108(2.1)	187(4.0)	112(2.2)	106(2.1)	105(2.1)
고졸	465(4.6)	408(4.0)	372(3.7)	357(3.5)	349(3.5)	408(4.1)	356(3.5)	373(3.6)	347(3.4)
대졸 이상	369(3.8)	345(3.4)	296(2.9)	302(3.0)	284(2.8)	352(3.4)	373(3.5)	316(3.0)	312(3.0)
취업무경험실업자	52	45	45	32	44	58	48	42	33
취업유경험실업자	977	820	741	731	696	889	793	753	730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2012. 9), 『2012년 8월 고용동향』.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전문위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2년 6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6.2% 상승

- 2012년 6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963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2,790천 원) 6.2%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5.5% 상승해 2,453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6.5% 상승하여 196천 원을 기록하였고, 특별급여 증가율은 5.1% 상승하여 490천 원을 기록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12년 6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모두 상승하여 2011년 6월 대비 5.5% 상승한 3,139천 원을 기록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9.4% 상승한 1,303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2년 1~6월 누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944천 원으로 전년동누계(2,766천 원)대비 6.4%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1년 1~6월 누계 대비 6.4% 상승한 3,118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 가운데 정액급여는 2011년 1~6월 누계 대비 5.7%, 초과급여는 3.8%, 특별급여는 11.0% 상승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2011년 1~6월 누계 대비 9.2% 상승한 1,279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2년 6월 실질임금은 3.9% 증가함.
 - 2012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010년 기준)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3.9%를 기록함(그림 7 참조).
 - 2012년 1~6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3.7%를 기록함.

〈표 6〉 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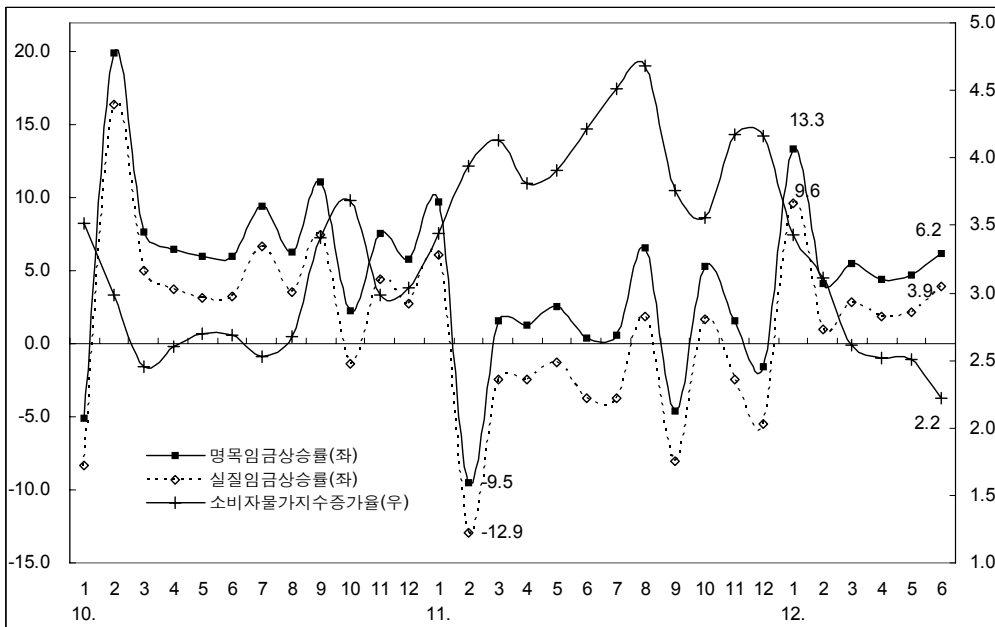
(단위: 천 원, %, 2010=100.0)

	2009	2010	2011	2012				
				1~6월 누계	6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636 (2.6)	2,816 (6.8)	2,844 (1.0)	2,766 (0.8)	2,790 (0.4)	2,944 (6.4)	2,963 (6.2)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2,863 (2.2)	3,047 (6.4)	3,019 (-0.9)	2,930 (-1.2)	2,976 (-1.8)	3,139 (5.5)	
	정액급여	2,139 (4.0)	2,234 (4.5)	2,341 (4.8)	2,312 (4.3)	2,325 (4.2)	2,445 (5.7)	2,453 (5.5)
	초과급여	175 (-2.2)	196 (12.2)	179 (-8.4)	175 (-7.9)	184 (-8.6)	182 (3.8)	196 (6.5)
	특별급여	550 (-2.8)	617 (12.3)	498 (-19.3)	442 (-21.0)	467 (-22.0)	491 (11.0)	490 (5.1)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073 (1.9)	1,056 (-1.6)	1,215 (15.1)	1,172 (10.8)	1,191 (13.1)	1,279 (9.2)	1,303 (9.4)	
소비자물가지수	97.1 (2.8)	100.0 (2.9)	104.0 (4.0)	103.2 (3.9)	103.8 (4.2)	106.0 (2.7)	106.1 (2.2)	
실질임금증가율	-0.1	3.8	-2.9	-2.9	-3.7	3.7	3.9	

주: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7〉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2010=10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6월 대부분 산업에서 임금상승률 증가

- 2012년 6월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금 상승이 가장 높음.
 - 2012년 6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18.5%), 금융 및 보험업(12.2%), 부동산업 및 임대업(11.7%) 등에서 임금상승률이 크게 나타남.
 - 반면,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0.3%), 광업(-5.5%), 여가관련서비스업(-2.0%)임.
 -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이며, 가장 적은 산업은 사업서비스업으로 나타남.
- 2012년 1~6월 누계 기준 부동산 및 임대업의 임금 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년 1~6월 누계 전 산업에서 임금이 증가함.
 -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9.9%), 운수업(8.6%), 제조업(8.3%) 등에서 두드러짐.

〈표 7〉 산업별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	2011	2012			
			1~6월 누계	6월	1~6월 누계	6월
전 산업	2,816 (6.8)	2,844 (1.0)	2,766 (0.8)	2,790 (0.4)	2,944 (6.4)	2,963 (6.2)
광업	3,000 (7.3)	3,309(10.3)	3,324(13.4)	4,433 (22.9)	3,477 (4.6)	4,189 (-5.5)
제조업	2,985 (9.1)	3,034 (1.6)	2,898 (1.5)	2,937 (0.5)	3,138 (8.3)	3,110 (5.9)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455 (7.0)	5,482 (0.5)	5,189(-1.7)	7,710 (-9.3)	5,153(-0.7)	6,914(-10.3)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441 (5.2)	2,488 (1.9)	2,391 (1.3)	2,415 (2.5)	2,558 (7.0)	2,583 (6.9)
건설업	1,944 (7.9)	2,181(12.2)	2,175(13.0)	2,193 (15.9)	2,258 (3.8)	2,300 (4.9)
도매 및 소매업	2,769 (7.1)	2,942 (6.3)	2,817 (4.3)	2,811 (7.5)	3,026 (7.4)	3,023 (7.5)
운수업	2,381 (5.4)	2,393 (0.5)	2,316 (0.4)	2,430 (-0.6)	2,516 (8.6)	2,578 (6.1)
숙박 및 음식점업	1,462 (5.0)	1,653(13.0)	1,624(13.2)	1,696 (16.2)	1,725 (6.2)	2,010 (18.5)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385 (4.7)	3,692 (9.1)	3,670(10.6)	3,618 (11.1)	3,848 (4.9)	3,681 (1.7)
금융 및 보험업	4,680 (4.7)	4,771 (1.9)	4,796 (0.8)	4,727 (2.9)	5,078 (5.9)	5,306 (12.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65 (4.3)	2,017 (2.6)	1,990 (0.3)	2,039(-20.2)	2,187 (9.9)	2,278 (11.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957 (6.9)	3,870(-2.2)	3,682(-2.6)	3,712 (-0.8)	3,973 (7.9)	3,951 (6.5)
사업서비스업	1,848 (8.2)	1,700(-8.0)	1,654(-8.9)	1,659(-11.4)	1,751 (5.8)	1,733 (4.5)
교육서비스업	3,157 (1.4)	2,985(-5.4)	2,978(-5.6)	2,761 (-6.1)	3,099 (4.1)	2,949 (6.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94 (2.4)	2,490(-4.0)	2,429(-4.9)	2,426 (-6.2)	2,583 (6.4)	2,572 (6.0)
여가관련서비스업	2,107 (0.9)	2,130 (1.1)	2,078 (1.2)	2,206 (3.9)	2,132 (2.6)	2,161 (-2.0)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02 (4.0)	2,185 (3.9)	2,147 (4.0)	2,186 (2.5)	2,210 (2.9)	2,226 (1.8)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6월 사업체 전 규모에서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 증가

- 2012년 6월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5~299인 규모와 300인 이상 사업체 모두에서 증가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2012년 6월 기준 2,81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9% 상승하였으며, 정액급여(6.2%), 초과급여(8.6%), 특별급여(10.5%) 모두 증가한 영향임.
 - 300인 이상 사업체의 2012년 6월 상용임금총액은 4,312천 원으로 2011년 6월 대비 1.9% 상승하였으며, 이는 정액급여(3.0%)와 초과급여(2.1%)의 상승 기인함.
 - 반면, 300인 이상 규모의 특별급여(-1.0%)는 감소함.
- 2012년 1~6월 누계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전 사업체에서 증가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 임금상승률(6.6%)과 300인 이상 규모의 상용임금총액 임금상승률(4.6%)은 모두 플러스 증가를 기록함.
 - 그러나 300인 이상 규모의 초과급여는 마이너스 상승(-1.2%)을 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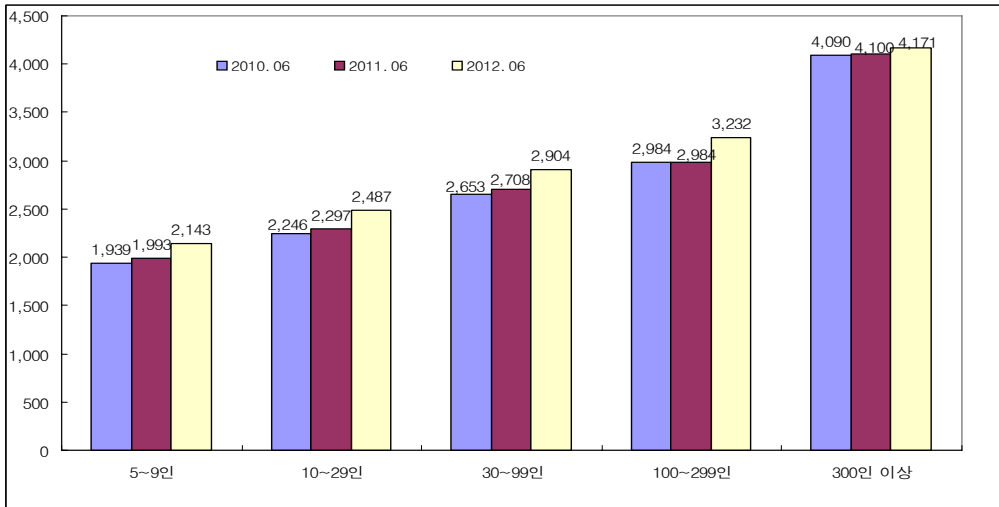
(단위: 천 원, %)

		2010	2011	2012			
				1~6월 누계		1~6월 누계	
				6월		6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047 (6.4)	3,019 (-0.9)	2,930 (-1.2)	2,976 (-1.8)	3,118 (6.4)	3,139 (5.5)
	정액급여	2,234 (4.5)	2,341 (4.8)	2,312 (4.3)	2,325 (4.2)	2,445 (5.7)	2,453 (5.5)
	초과급여	196 (12.2)	179 (-8.4)	175 (-7.9)	184 (-8.6)	182 (3.8)	196 (6.5)
	특별급여	617 (12.3)	498 (-19.3)	442 (-21.0)	467 (-22.0)	491 (11.0)	490 (5.1)
	비상용임금총액	1,056(-1.6)	1,215(15.1)	1,172 (10.8)	1,191 (13.1)	1,279 (9.2)	1,303 (9.4)
5~299인	상용임금총액	2,699 (5.5)	2,675 (-0.9)	2,611 (-1.1)	2,638 (-1.6)	2,784 (6.6)	2,819 (6.9)
	정액급여	2,082 (4.3)	2,204 (5.9)	2,177 (5.4)	2,192 (5.3)	2,312 (6.2)	2,329 (6.2)
	초과급여	176 (13.6)	150 (-14.5)	147 (-14.2)	154 (-14.1)	155 (5.5)	167 (8.6)
	특별급여	441 (8.4)	321 (-27.3)	287 (-28.7)	292 (-30.7)	317 (10.2)	323 (10.5)
	비상용임금총액	1,059(-1.6)	1,216 (14.8)	1,173 (10.8)	1,192 (12.5)	1,290 (10.0)	1,319 (10.7)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291 (9.1)	4,273 (-0.4)	4,132 (0.1)	4,230 (-0.9)	4,323 (4.6)	4,312 (1.9)
	정액급여	2,779 (5.2)	2,842 (2.3)	2,823 (2.4)	2,820 (2.1)	2,925 (3.6)	2,906 (3.0)
	초과급여	268 (9.6)	286 (6.7)	282 (9.7)	294 (5.8)	279 (-1.2)	300 (2.1)
	특별급여	1,245 (18.7)	1,146 (-8.0)	1,027 (-7.9)	1,116 (-9.1)	1,120 (9.1)	1,105 (-1.0)
	비상용임금총액	1,025 (-0.3)	1,208 (17.8)	1,159 (11.2)	1,180 (19.9)	1,168 (0.8)	1,147 (-2.8)

주: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8] 상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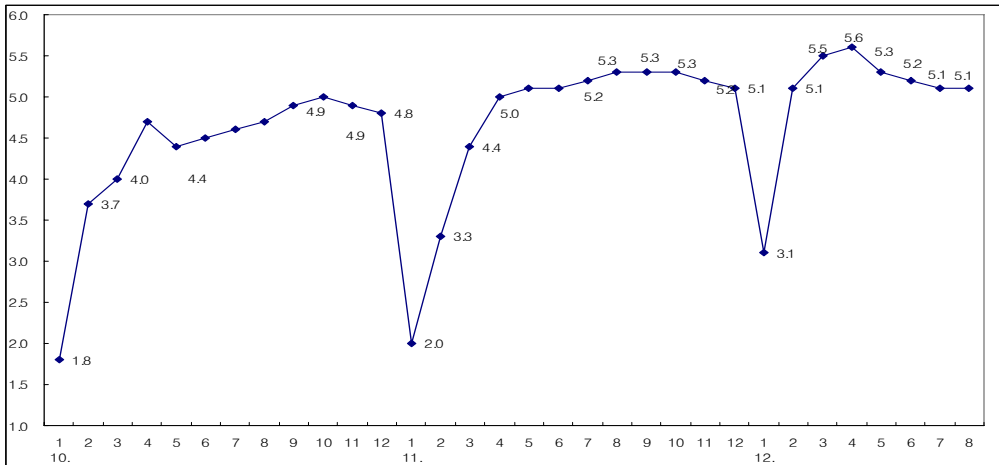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8월 협약임금 인상률 5.1%

○ 2012년 8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5.1%로 2011년 8월 인상률(5.3%)에 비해 0.2%p 하락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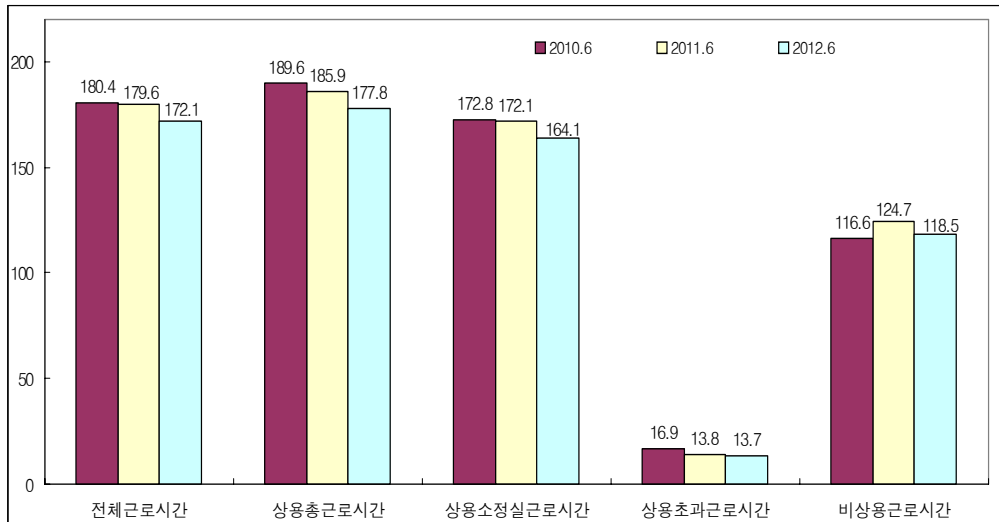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2년 6월 근로시간, 4.2% 감소

- 2012년 6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4.2% 감소함.
 - 2012년 6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2.1시간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179.6시간)에 비해 7.5시간(4.2%) 감소함(그림 10 참조).
 - 근로시간의 감소는 2011년 6월에 비해 월력상 근로일이 1일 적은 데 기인함.
- 2012년 1~6월 누계 근로시간은 전년동기대비 0.5% 감소함.
 - 2012년 1~6월 누계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4.3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누계(175.1시간)에 비해 0.8시간(0.5%) 감소함.

[그림 10]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6월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12년 6월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한 전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2012년 6월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제조업(185.2시간, -5.2%),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159.3시간, -5.6%) 등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반면 2012년 6월 근로시간이 증가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97.4시간, 2.2%)임.
 - 2012년 6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숙박 및 음식점업(197.4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교육서비스업(145.8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 2012년 1~6월 누계 근로시간은 사업비즈니스업, 운수업에서 증가함.
 - 2012년 1~6월 누계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사업서비스업(172.4시간, 2.2%), 운수업(181.7시간, 2.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4.0, 1.5%) 등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반면, 건설업(150.5시간, -2.4%), 제조업(187.3시간, -1.4%)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표 9〉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0	2011	2012			
			1~6월 누계	6월	1~6월 누계	6월
전 산업	176.7 (0.3)	176.3 (-0.2)	175.1 (0.0)	179.6 (-0.4)	174.3 (-0.5)	172.1 (-4.2)
광업	188.1 (0.3)	186.9 (-0.6)	185.5 (0.2)	193.8 (4.1)	185.7 (0.1)	184.4 (-4.9)
제조업	192.1 (1.9)	190.6 (-0.8)	189.9 (-0.3)	195.4 (-1.2)	187.3 (-1.4)	185.2 (-5.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6.9 (-0.6)	177.1 (0.1)	175.2 (0.2)	182.0 (1.1)	175.9 (0.4)	174.5 (-4.1)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92.9 (-0.6)	186.2 (-3.5)	184.7 (-3.4)	189.4 (-3.5)	184.9 (0.1)	183.6 (-3.1)
건설업	146.1 (-0.7)	153.9 (5.3)	154.2 (5.0)	155.5 (4.0)	150.5 (-2.4)	149.4 (-3.9)
도매 및 소매업	177.2 (-1.0)	175.1 (-1.2)	173.7 (-1.2)	179.3 (-2.1)	173.6 (-0.1)	171.6 (-4.3)
운수업	184.6 (0.1)	181.6 (-1.6)	178.0 (-2.7)	182.9 (-1.5)	181.7 (2.1)	180.6 (-1.3)
숙박 및 음식점업	163.7 (-0.4)	186.2 (13.7)	186.3 (15.6)	193.2 (18.7)	188.6 (1.2)	197.4 (2.2)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6.2 (-0.4)	164.5 (-1.0)	162.9 (-1.2)	168.8 (-0.9)	162.8 (-0.1)	159.3 (-5.6)
금융 및 보험업	165.3 (-0.9)	163.6 (-1.0)	161.2 (-1.4)	167.2 (-0.7)	162.5 (0.8)	159.3 (-4.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0.4 (-0.8)	194.2 (-3.1)	193.2 (-3.0)	195.6 (-2.6)	194.7 (0.8)	192.5 (-1.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6.3 (-0.8)	166.2 (-0.1)	164.2 (-0.2)	170.0 (0.2)	164.8 (0.4)	161.3 (-5.1)
사업서비스업	180.1 (0.6)	172.1 (-4.4)	168.7 (-4.6)	173.2 (-4.2)	172.4 (2.2)	168.6 (-2.7)
교육서비스업	149.9 (-2.5)	152.9 (2.0)	150.3 (1.8)	153.6 (1.3)	150.1 (-0.1)	145.8 (-5.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6.5 (0.1)	173.5 (-1.7)	171.5 (-1.7)	174.6 (-3.8)	174.0 (1.5)	172.1 (-1.4)
여가관련서비스업	158.7 (-1.8)	157.1 (-1.0)	155.4 (-1.4)	156.8 (-3.5)	156.4 (0.6)	155.4 (-0.9)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73.9 (-0.9)	173.6 (-0.2)	174.0 (0.8)	179.4 (-0.4)	169.5 (-2.6)	167.2 (-6.8)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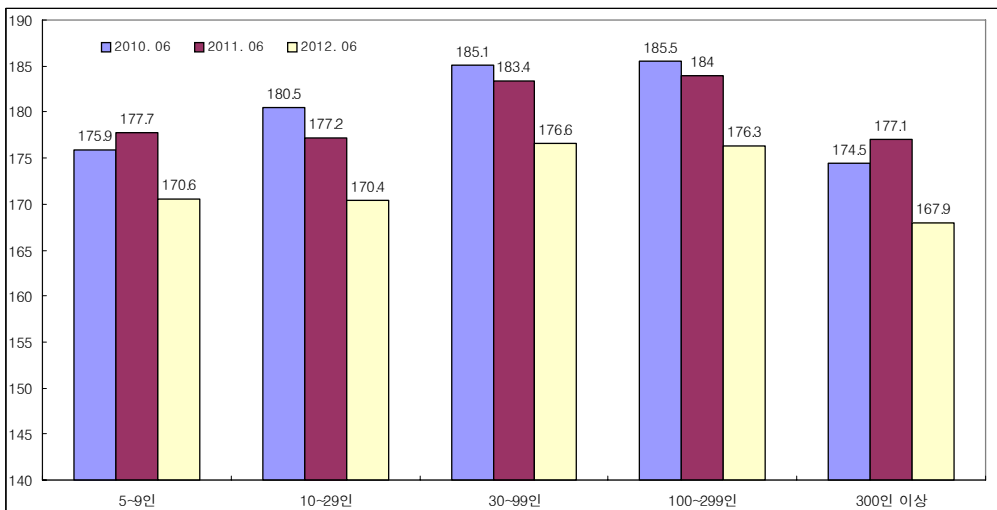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6월 전 규모 사업체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12년 6월 사업체규모별 전체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전체 모두 감소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0.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0%,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0.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8%,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6.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7%,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6.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2%,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7.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2% 감소함(그림 11 참조).
- 한편 2012년 1~6월 누계 사업체규모별 전체근로자 근로시간은 5~9인, 10~29인, 300인 이상 규모에서 감소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2.6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3%, 10~29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1.3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1.6%,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1.5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2% 감소함.
 - 반면,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8.7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4%,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9.6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4% 증가함.

[그림 11]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



주 :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합의

- 현대자동차 노사는 9월 5일 밤샘노동을 폐지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 합의안을 체결하였음.
 - 현재 현대자동차의 근무형태는 ‘10/10’ 제도로, 주간조는 08시부터 18시 50분까지, 야간조는 21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함.
 - 노사 양측이 주간연속 2교대제에 합의함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2013년 3월 4일부터 ‘8/8’제도를 도입하되, 현재의 설비 및 제반여건상 ‘8/8+1(연장근무)’ 근무형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함. 이에 따라 주간조는 오전 6시 40분부터 15시 20분까지, 야간조는 15시 20분부터 다음날 01시 10분까지 근무함. 향후 노사는 2014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하여 2016년 3월까지 ‘8/8’ 체제를 도입하기로 함.

		변경전	변경후
근무시간	주간	08:00am~18:50pm	06:40am~15:20pm
	야간	21:00pm~08:00am	15:20pm~00:00am(8/8) 15:20pm~01:10am(8/8+1)
실근무시간	주간	9시간 15분	7시간 40분
	야간	9시간 30분	7시간 40분(8/8) 8시간 50분(8/8+1)

※ 위의 근무시간은 점심 및 휴게 시간을 포함함.

※ 변경후 상시주간조 근무자의 시·종업 시간은 08:00~17:30(연장근무 30분 포함)으로 함.

- 노사는 ‘8/8+1’ 근무형태 도입시점의 인원 및 설비 등 제반조건을 기준으로 생산성 향상과 추가 작업시간 확보를 통해 현재 시스템의 생산능력 및 생산량을 유지하기로 함.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신규투자, 보전부문, 장시간근로 해소 등으로 인한 필요인원은 충원하고 세부 시행방안은 각 부문별로 별도 합의하기로 함.
- 이번 합의안에 대한 노사 양측의 평가는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됨.
 - 회사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서 노사가 국내외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데 공감했다”며 “특히 주간연속 2교대제라는 획기적인 근무형태를 도입함으로써 밤샘노동을 없애 직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더 좋은 품질의 차

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며 합의의 의미를 전함.

- 이에 비해 노조 측은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해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여전히 노사간에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는 입장임.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으로 노동시간은 주당 15% 줄어들지만 생산물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현재보다 높은 노동강도가 예상되기 때문임.
- 현재 노조는 회사에 추가적인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제도 시행 뒤 검증기간을 거쳐 필요 인원 등은 협의로 풀자”고 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향후 노사간에 이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이번 현대자동차의 합의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지난 9월 4일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2014년 3월 1차 협력사부터 순차적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함.
 - 하지만 경영 상황이 열악한 부품업체들이 밤샘노동 폐지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한 관련 전문가는 “중소업체들의 경우 야간근로를 없애는 등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설비투자와 인력채용이 불가피해 경영위기에 몰릴 수 있다”며 “원청의 적정한 단가 보장이거나 정부의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한편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이 9월 12일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간 단체협약을 최종 타결함.
 - 기아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제의 주요 합의 내용은 △2013년 3월 4일부터 전 공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를 본격 시행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당 생산대수(UPH) 향상 등 생산성 제고로 총 생산량 보전 △종업원 임금 안정성 증대를 위한 월급제 시행 등임.
 - 한국지엠은 2014년 1월 1일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함.
- 다음 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완성차 주간연속 2교대제 노사합의를 비교한 것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시범일시	2013년 1월 7일~18일	기 시행 (2012년 3월 26일~4월 6일)	2013년 1분기 이내
도입시기	2013년 3월 4일	2013년 3월 4일	2014년 1월 1일
생산량 유지 및 인원운영	30UPH 증대+가작업시간 141.4	30UPH 증대+가작업시간 84.5시간	
임금체계	월급제 전환 및 생산량 연동 수당 도입 - 근무능률수당(UPH 증대에 따른 보장) - 시간보전수당(추가시간에 따른 보전) - 주간2교대 수당(심야할증보전액)	월급제 전환 및 생산량 연동 수당 도입 - 근무형태변경수당(UPH 증대 및 추가시간에 따른 보전) - 심야보전수당(심야할증보전액)	- 노사공동 주간연속 2교대 추진위 구성 - 2013년 2분기 주간연속 2교대 시행방안 결정

UPH: 시간당 생산대수.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특별교섭에서 논의

- 지난 8월 30일, 현대자동차 노사는 불법파견 문제를 본교섭에서 분리, 사내하청 노조도 참여하는 특별교섭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9월 24일 현대자동차 노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간 특별 협의를 재개함. 이 날 실무 협의에는 현대자동차 노사협력실장, 협력지원실장, 노사기획실장, 현대자동차 노조의 사무국장, 기획실장, 정책실장 등 핵심실무자들이 참석했음.
 - 노사는 향후 △2015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3000명 채용 △하청근로자의 처우 개선 △직영근로자로 채용시 차별금지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관한 문제 △노동위원회 계류 중인 해고자 관련 사항 등 제반 문제를 논의할 예정임.
- 하지만 회사 측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회사 측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 입장에서 3천명 신규채용안은 전향적인 결단이었다”며 “신규채용안에 대해 특별교섭에서 심도 있게 따져본 적이 없는 만큼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임.
 - 이에 반해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 측이 불법파견 문제를 인정하고 해당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5월 마련한 6대 요구안에 대해 회사 측에 일괄제시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함. 노조가 요구한 6대 요구안은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배·고소·고발·징계·해고·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등의 철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한편 지난 9월 4일 언론에 따르면, 불법파견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됨.
 -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파견법 시행(‘12.8.2)에 따른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 123명을 파견받아 사용한 씨제이 대한통운, 뉴로시스, 파인, 협성정공, 우리산업(평택공장) 등 5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힘.
 - ※ 개정 파견법에 의하면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될 경우 근속기간 2년 미만인 노동자라도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업체에 근로자 123명을 즉시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며 “123명 중에는 근속기간 2년 미만인 근로자 93명이 포함돼 개정파견법이 적용된 첫 사례”라고 설명함. 만약 사용업체가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 조치하는 한편, 과태료 12억 3,0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힘.

◆ **국회 환노위, 쌍용자동차 청문회 개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월 20일 쌍용자동차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함.
 - 이번 청문회에서는 쌍용자동차의 회계조작 의혹, 파업 당시 폭력진압과 후유증, 무급휴직자 복직합의 미이행 등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음.
 - 청문회에는 이유일 쌍용자동차 사장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김규한 현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 김정우 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음. 하지만 국회가 핵심 증인으로 지목한 최형탁 쌍용자동차 전 대표이사과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은 불출석하여 논란이 되었음.
- 청문회에서는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당시 쌍용자동차와 회계법인이 회계보고서를 조작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함.
 - 이들은 회계보고서가 법정관리 신청과 정리해고 합법성을 얻기 위한 핵심 근거였지만 이것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임.
 - 더불어 시민사회단체들은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부실을 질타함. 당시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법 위반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함.
- 또한 국회의원들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상부의 지시 없이 과잉진압을 지휘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함에 따라 양측간 이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벌어짐.

- 다수의 의원들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2009년 경기지방경찰청장 시절에 당시 폭력진압에 부정적이었던 강희락 전 청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청와대와 직접 연락하여 경찰력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함. 아울러 의원들은 조 전 경찰청장이 옥쇄파업을 벌이던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에게 테이저건 사용을 허용하였다는 의혹이 짙다고 질타함.
- 여야 의원들은 “노사간 합의를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행동에 나선 것”이고, “폭력을 행사했던 경찰이나 용역업체 직원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 한편 당시 노사합의 사안인 무급휴직자와 해고자 복직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과 회사 측의 시각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의원들은 근무형태 개편 등을 통해 신규충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특히 심상정 의원(무소속)은 현재 쌍용자동차가 제시하는 가동률이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600여 명은 즉시 고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함.
 - 이에 회사 측은 “현재 회사가 여전히 적자상태이기 때문에 복직 여력이 없다”며 “연간 생산대수가 19만 대는 돼야 충원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쌍용자동차 해고자의 재고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힘.
-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쌍용자동차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촉구함.
 - 이들은 이번 청문회는 진실규명에 필요한 증인들이 불출석했고 청문회로 사건의 해결 및 무급휴직자와 해고자 복직문제를 푸는 방안을 논의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다고 지적함.

◆ 국회 환노위,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 개최

- 9월 24일에 개최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다수의 기업들이 노조파괴 프로그램을 사전에 기획하고 실행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함.
 - 다수 의원들은 “많은 기업에서 노사 교섭이 결렬되면 용역이 투입되고 직장 폐쇄가 이루어진 후 신규 노조를 만드는 노조 말살 패턴이 발견됐다”며 ‘창조컨설팅’이라는 업체가 배후에 있음을 지적함.
 - 의원들은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다수의 기업들은 ‘공격적 직장폐쇄→시설경비용역 투입→신규노조 등장·노-노 갈등→기존노조의 교섭권 박탈과 무력화’라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함.

- 특히 이들은 창조건설팅이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사관계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함. 야당의 한 의원은 유성기업이 정부의 주요기관들과 접촉하면서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 및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을 현대자동차에 보고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함.
-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조는 “사용자와 창조건설팅이 결탁해 헌법에 명시된 조합원들의 노조활동을 두고 돈으로 거래를 한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반면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자동차산업 특유의 실시간 납품구조로 인해 협력업체의 경영상황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이루어진다”며 “이는 안정적인 완성차 라인가동을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함.

◆ SJM 용역폭력 사태 논란 심화

-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SJM과 만도의 직장폐쇄·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회사 측이 직장폐쇄와 용역경비 투입을 사전에 기획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조사단은 금속노조 SJM지회의 파업 3개월 전인 4월에 컨택터스(주)가 SJM 경영지원팀의 대리과 이메일을 통해 견적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함. 또한 조사단은 “SJM은 컨택터스(주)가 6월 초 본 계약을 체결했으며, 6월 17일 대체인력 투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함.
 - 하지만 실제 금속노조 SJM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된 것은 6월 26일이고, 첫 쟁의행위는 7월 12일에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조사단은 회사가 직장폐쇄와 용역경비 투입을 사전에 기획하였다고 주장함.
- 금속노조는 9월 13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항의하며 부분파업을 전개함.
 - 고용노동부는 SJM의 직장폐쇄 과정에서 행사된 용역폭력이 범위반인지에 대한 질문에 “쟁의행위에서 폭력행위를 금지한 노조법 규정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봐야 하고 직장폐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함.
 - 하지만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전 기획에 의한 폭력을 동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형평성을 잃은 잘못된 법집행”이라고 말함.
- 한편 SJM 노사는 9월 12일 직장폐쇄 48일 만에 단체교섭을 재개하였고, 또 회사 측이 23일 직장폐쇄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짐.

- 노조 측은 단체교섭에서 회사 측과 조합 측이 각기 제출한 요구안이 한 건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회사 측은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42개 요구항 가운데 11개 항이 경영권 침해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교섭에 난항을 겪었다”고 말함.
- 전국금속노조 SJM지회는 25일 “폭력 사태와 관련한 사과문을 경영진이 조합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낭독하는 등 노사 임단협이 대부분 마무리돼 26일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힘. 하지만 노조는 업무에 복귀 후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하면서도 파업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임.

◆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 심화

- KT가 비밀리에 퇴출 프로그램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
 - 9월 초 언론보도에 따르면, KT가 본사 차원에서 극비리에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것으로 확인됨. 이 날 공개된 ‘KT 중기 인적자원 관리계획’ 기획안에 따르면, KT는 퇴출대상자를 미리 선정하고 이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여 실적이 부진하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퇴직 혹은 전직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남.
 -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공개된 문건은 기업이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중장기 인력계획 보고서일 뿐 회사가 강제로 직원들을 퇴출시키지는 않았다”며 퇴출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함.
 - 고용노동부도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문건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인력퇴출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본사 차원의 위법 사실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음.
- 이와 더불어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이 KT 계열사에도 실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 KT 자회사인 BC카드사는 ‘인력 재배치 대상자’ 140명을 선정해 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들에게 희망퇴직을 종용했다고 알려짐. KT의 또 다른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와 KTis도 현재 퇴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 특히 KTis 지부는 퇴출 대상을 선정한 뒤 이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맡기거나 일을 주지 않아 스스로 그만두게 하거나 징계를 내려 회사를 떠나게 하는 과정이 KT 본사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과 유사하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계열사 직원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을 가동한 적은 없고 직원들을 강제로 퇴직시킬 방안도 없다”고 말함.

- 한편 KT가 노조 활동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
 - 야당의 한 의원은 KT가 지난해 노조 대의원 선거에 개입하고 노조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직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정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함.
 - 이와 관련해 법조계의 한 인사는 “노조의 조직운영에 사용자가 지배·개입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함. 또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KT의 전반적인 노무관리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함.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고 퇴직 공제금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임금지급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여 당해 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생기면 근로자가 즉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퇴직 공제금과 관련해, 현행 법은 퇴직공제부금을 12개월(252일) 이상 납부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60세가 된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취약한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65세가 넘으면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고 납부 기간과 상관없이 적립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 밖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막기 위해 ‘근로자 직접신고제’를 도입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비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공공공사에서 건설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없어지도록 하고 퇴직공제금이 실질적으로 건설근로자들의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함.

KLI

(박지은, 노동정책분석실 연구원)